

규격·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행정처분기준이 표시의 변경·사용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시를 변경하도록 명하고, 이를 이행한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한다.
- 라. 행정처분기준이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명하고,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판매정지를 해제한다. 다만, 그 기간 동안 재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을 취소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·품질검사를 받은 경우	법 제22조 제4항제1호	판정취소		
나. 규격·품질표시를 변조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	법 제22조 제4항제2호	표시의 변경· 사용정지	표시의 변경· 사용정지	판정취소
다. 규격·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·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	법 제22조 제4항제3호	판매정지	판정취소	
라. 규격·품질이 규격·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4항제4호	판매정지	판정취소	
마. 표시의 내용이 규격·품질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	법 제22조 제4항제5호	표시의 변경· 사용정지	표시의 변경· 사용정지	판정취소
바.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4항제6호	판정취소		